급여기준 발췌 - 영양수액제 뉴트리플러스주(가상 품목)

JJ병원(가상) 보험심사팀 정리본 / 교육용 가상 품목

1항	경구나 위장관으로 먹기 어려운 환자에게 투여할 때 인정한다.
2항	경구 섭취가 가능한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
3항	투여 기간이 5일을 넘으면 계속 투여가 필요한 사유를 진료기록에 적어야 인정한다.
4항	사유 없이 5일을 넘겨 투여한 경우 초과한 일수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※ 정리본입니다. 실제 업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고시와 대조해야 합니다.

교육용 가상 문서입니다.